

실업급여 반환명령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

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,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제62조에 의거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서(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)를 2회 발송하였으나, 모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.

2026. 10. 13.

대전지방고용노동청충주지청장



- 1. 건 명 : 처분 사전통지서(실업급여 반환명령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)
- 2. 근 거 :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, 고용보험법 제61조, 제62조
- 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: 붙임-공시송달 명단 참조
- 4. 공고기간 : 2026. 10. 13. ~ 2026. 10. 27.(15일간)
- 5. 의견제출안내 :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충주지청 지역협력과(충북 충주시 탄금대로 39, 4층)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(F.0503-8803-0700)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6. 기타사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충주지청 지역협력과 고용보험수사관 정수아(전화 043-850-4060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【붙임】

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 사전통지 관련 공시송달 명단

(공고기간 : 2026. 10. 12. ~ 2026. 10. 26.)

연 번	성함	생년월일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송달불능사유
1	송**	'82.07.02.	충북 음성군 음성읍 한불로 (이하생략)	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	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- 사유: 수급기간 중 근로사실 미신고 (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: 2026. 5. 27.~2026. 6. 19.) - 총 반환명령액: 1,540,600원	폐문부재로 반송 (2026.9.11., 2026.9.28.)

2026년 10월 13일

대전지방고용노동청충주지청장

